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64
----------	-------

발의연월일 : 2025. 8. 13.

발 의 자 : 이만희 · 서천호 · 엄태영
김기웅 · 우재준 · 이성권
김대식 · 구자근 · 김용태
조은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조의2는 조합등 및 중앙회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2024년에 만료되어 해당 공공기관에 임산물을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는 임업인의 임산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한편, 이와 동일한 내용의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의 경우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 일부개정되었음.

이에 현행법의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새롭게 5년 더 연장함으로써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를 확보하여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장에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합등과 중앙회가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등 및 중앙회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11조의2(「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합등과 중앙회가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등 및 중앙회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u> <u><신 설></u>	<u><삭 제></u> <u>제11조의3(「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합등과 중앙회가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u>

는 조합등 및 중앙회를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
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